

# 감사위원회 운영규정

(제정) 2017년 11월 2일

(개정) 2020년 8월 13일

롯데정보통신주식회사

# 제1장 총칙

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롯데정보통신(주)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 감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.

## 제3조(기본자세)

1. 위원회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경영을 감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,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
2. 위원회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및 이론의 연구와 감사기술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제4조(의무)

1.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2. 감사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제5조(책임)

1. 감사위원이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2.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3. 전 2항의 행위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감사위원도 전 2항의 책임이 있으며, 그 결의에 참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감사위원은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.

## 제2장 감사위원회 구성

### 제6조(구성)

1.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(이하 "위원" 이라고 한다)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그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. 단,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안된다.
2.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법령이 정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.
3.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제7조(위원장)

1.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

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선정한다.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
2.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3.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

### **제8조(임기)**

1.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령, 정관에 정해진 사항이 없을 경우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시점까지로 한다. 다만,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
2. 감사위원회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.

## **제3장 감사위원회 회의**

### **제9조(위원회)**

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하며, 정기위원회는 매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,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 **제10조(소집권자)**

1.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2.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감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 
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감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**제11조(소집절차)**

감사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1일 전까지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게 서신, 전자우편 또는 구두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단, 위원 전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### **제12조(의결 및 보고사항)**

1.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- 1)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
  - 2)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
  - 3) 감사보고서의 작성, 제출
  - 4) 임시이사회 소집청구
  - 5)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
  - 6)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 및 자회사의 조사
  - 7) 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
  - 8)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
  - 9) 재무제표를 감사 또는 검토할 외부감사인 선임
  - 10)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
  - 11)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
  - 12)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 결정 여부
  - 13) 감사계획 및 결과
  - 14)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

- 15) 내부통제제도(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)의 평가
- 16)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
- 17) 감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및 개폐
- 18) 관련법령, 정관,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
- 19)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) 자체 또는 외부 감사결과
- 2) 이사의 업무 등 보고
- 3)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
- 4)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 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
- 5)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 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
- 6) 감사관련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사항
- 7) 관련법령
- 8)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수준 감사 결과 보고
- 9)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여 요청한 사항

### **제13조(결의방법)**

1.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감사위원 과반수로 한다.  
이 경우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2.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·해임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재적 감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3.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#### **제14조(권한)**

1. 업무 감사

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.

2. 영업보고요구 및 업무재산 조사

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3. 이사 보고의 수령

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.

4. 자회사에 대한 조사

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의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또한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5.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

위원회는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6. 주주총회 소집청구

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

-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7.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  8.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, 변경, 해임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.
  9.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출석,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.
  10. 위원회는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와 기타법령,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

#### **제15조(의사록)**

1.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2.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의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 **제4장 보 칙**

#### **제16조(외부감사인과의 연계)**

1.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 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.
2.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# **제17조(감사록)**

1. 감사위원회의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한다.
2.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

또는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

**제18조(규정의 개폐)**

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